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참 고 자 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8.16(목) 14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8. 16. (목)	담당부서	미주통상과 중동아프리카통상과 무역정책과 무역안보과 석유산업과
담당과장	김장희 과장(044-203-5290) 안세진 과장(044-203-5720) - 음잔디 과장(044-203-4050) 박재영 과장(044-203-5220)	담 당 자	조진화 사무관(044-203-5651) 김형관 사무관(044-203-5721) 이주노 사무관(044-203-4022) 신정대 사무관(044-203-4051) 박영진 사무관(044-203-5225)

산업부,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대응 TF 개최

- 1차 제재 유예기간 만료(8.6) 영향점검 및 기업 피해지원 대책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**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**로 미국의 대(對) 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이란과 거래하는 **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**하고 **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'관계기관 합동 TF회의'를 개최**하였다.

< 회의 개요 >

* (일시/장소) '18. 8. 16(목) 14시, 대한상의 소회의실(지하1층)
* (참석기관) **(정부)**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(주재), 국토교통부, 기획재정부, 외교부 / **(유관기관)**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전략물자관리원, 중소기업진흥공단, 한국무역보험공사, 한국무역협회 / **(업종별 협단체)** 조선해양플랜트협회, 플랜트산업협회, 한국기계산업진흥회, 한국석유화학협회, 한국섬유산업연합회, 한국자동차산업협회,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한국철강협회 / **(기업/은행)** 국내 정유사 및 은행 등 (이하 가나다순)

○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합의(JCPOA) 탈퇴시 발표(5.8)한 대(對) 이란 제재 내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8월 6일 서명함에 따라, 90일 동안 유예되었던 제재항목*에 대해 8월 7일(미국시간 8.7 0시)부터 미국의 제재가 복원되었다.

* △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, 이란의 △금·귀금속 거래, △자동차 관련 거래, △원자재(알루미늄, 철강, 석탄) 거래 등

○ 아울러, 11월 5일(미국시간 11.5 0시)부터는 이란의 항만·선박·조선분야, 이란산 석유·석유제품·석유화학제품 구매,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,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예정이다.

1.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발표(5.8) 이후 대응 현황

□ 5월 8일 미국의 대(對) 이란 제재 복원 발표 이후,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**영향 평가 및 국내 대책 마련**을 위한 **킥오프 회의**를 개최(5.9)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**'이란 비상대책반'을 설치**하여 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**정보를 상시 전파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*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**해 왔다.

* 온라인상담(tradedoctor.kotra.or.kr), 유선상담(1600-7119) 등

○ 아울러 이란과 거래하는 **기업의 피해 최소화**를 위해 무역협회, 전략물자관리원 등 주관으로 **기업 설명회**를 개최(총 9회*)하여 미국 제재 내용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한편,

* 1차: 서울(5.25, 450명), 부산(6.11, 75명), 대구(6.12, 22명), 울산(6.14, 12명), 창원(6.15, 46명)
2차: 서울(7.20, 205명), 부산(7.25, 46명), 대구(7.30, 32명), 광주(7.31, 22명)

○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5월부터 대(對) **이란 수출입 품목**의 **미국 제재 대상 여부**를 확인하는 이란 교역 및 투자 비**제재 대상 확인서를 발급***해 왔다.

* 8.14일 현재 총 2,835건의 신청 접수, 2,740건 발급

□ 아울러, 정부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 관련 예외국 인정을 위한 대미(對美) 협의를 2차례 진행한 바 있다. (1차: 6.18일 서울, 2차: 7.19 워싱턴 DC),

2. 미국의 이란제재 복원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대책

□ 산업부 및 유관기관은 미국의 이란 제재 본격화에 따른 대(對)**이란 수출기업의 피해 발생에 대비**하여 **유동성 지원, 대체시장 발굴** 등 **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.**

○ 강성천 차관보는 이란과의 수출입 동향을 **면밀히 점검**하는 한편, 미국의 대(對) 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한 **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**될 수 있도록 **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**할 것을 당부했다.

1 유동성 지원

❶ **(무역금융)** 한국**무역보험공사**는 8월말부터 대(對) 이란 제재로 수출피해가 발생한 **중소·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보증한도**를 **확대**하고, **무역 보험사고** 발생시 **신속히 보상**할 계획이다.

< 지원 개요 >

지원 대상	[**수출실적 감소**] 대(對) 이란 수출실적*이 30% 이상 감소 [**유효계약액 보유**] '18.5.8 기준 단기수출보험 유효계약액 보유 [**기 타**] 계약취소, 통관지연 등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 * 최근 2년간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수출실적 기준
지원 내용	[**유동성 지원**] ① '선적前 보증' 기업별 대출한도 최대 1.5배 확대 ② 매출·수출감소 기업의 기존 보증件 갱신시 한도유지 [**신속보상**] ① 수출보험 사고시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(2→1개월) ② 필요시, 보험금 先지급(70~80%) 및 사후정산 실시

❷ **(긴급경영안정자금 등) 중소벤처기업부**는 9월부터 대(對) 이란 매출 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**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**을 **완화***하고, 기 대출 자금의 **만기**도 기업 신청 시 **1년 연장**할 계획이다.

*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% 감소한 기업대상으로 일정 요건 충족시 지원대상이 되나, 대이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동 10% 감소요건 미적용

2 대체시장 발굴 지원

❶ **(수출마케팅 우선지원)** 이란 수출 기업의 **대체시장 진출**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등 **수출마케팅 프로그램** 신청시 **가점**을 **부여**하여 **우대선정** 할 계획이다.

* 예)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이 해외전시회 참가신청시 가점 10점(100점 만점) 부여

❷ **(무역사절단 파견)**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기업들이 **이란 대체시장**을 **발굴**할 수 있도록 **아랍에미리트(UAE)·사우디 등 인근 중동 지역**을 중심으로 **바이어 상담회, 해외전시회 참가, 프로젝트 수주사절단** 등 **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**할 예정이다.

* 이란 진출 주요분야인 건설·플랜트 업종에 특화된 중동 지역(UAE, 쿠웨이트, 오만 등)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파견(11월) / UAE 두바이 정보통신(10월)·건축기자재(11월) 등 해외전시회, 지자체 협력 중동 무역사절단 파견(UAE·사우디·카타르 등 7회) 등

3 정보제공

❶ **(모니터링/애로해소)** 산업부는 8월말부터 '**무역애로지원 TF***'를 주1회 운영하여 **업계 애로사항**을 **모니터링**하고 **해결책**을 **논의**할 예정이다.

* 구성: 산업부 무역정책관(주재), 무역협회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전략물자관리원, 한국무역보험공사, 업종별 협단체 등 유관기관

❷ **(정보제공)** 아울러 **미국의 이란 제재** 관련 **현안 발생시**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**설명회**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.

3. 예외국 인정 협의 계획

□ 한편, 11월 5일(미국시간 11.5 0시)자로 이란과의 석유 관련 거래 및 금융 거래가 금지되나, **미국이 예외를 인정**할 경우* **일정량의 원유 도입** 및 비(非)**제재품목의 수출입**을 위한 **금융거래**(원화결제계좌 유지)가 가능하다.

* 원유 수입을 상당히 감축(significant reduction of their volume of crude oil)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면 해당국가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금융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(미국 국방수권법 1245(d)(4)(D))

- 상기 "상당한 감축 예외" 관련, 미국 국무부는 유예기간('18.5.8~11.4) 동안 △원유수입 감축량 및 비율, △계약 종료, △실질적 감축 약속을 입증하는 여타 조치 등 원유 수입국의 감축 노력을 평가, 결정 (미국 재무부 FAQ상 설명)

□ 이에 따라, 정부(외교부, 기재부, 산업부 등 정부합동 대표단)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**우리 경제 및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**될 수 있도록 **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대미(對美) 협의를 지속**할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김장희 과장(044-203-5290), 조진화 사무관(044-203-5651),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안세진 과장(044-203-5720), 김형관 사무관(044-203-5721), 무역정책과 이주노사무관(044-203-40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